

공고 제 312 호

단기 4293 년 4 월 22 일

서고 지구 본모 이장에 관한건

위성과

126

12-1

공 이신 비나 국민 2

32

191

관	선	관	선
관	선	관	선

갑

전명	시정	사회국	의생과	의생과
총무과	회계과	회계과	회계과	회계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의생과

시정

부시정

전명 시오리구 분묘(西橋地已墳墓) 이강이 관한건

(묘의)

그제진에 관하되 별지와 같이 전설국장으로 부터
 시오리구 취득 정리 지구내에 있는 분묘의 장소요소의 취

가 있는바 이년(四二九)년(一)월(二)일(三)자(四) 내(五)무(六)부(七)구(八)시(九)제(一〇)九

호(一)로(二)시(三)행(四)명(五)령(六)된(七)도(八)시(九)제(一〇)칙(一一)지(一二)구(一三)로(一四)서(一五) 당(一六)시(一七)발(一八)권(一九)상(二〇)

〔東地大集場埋築火葬取諸規例〕 제(一)호(二)조(三)보(四)제(五)조(六)이(七)의(八)거

다음(一)과(二)같(三)이(四)이(五)장(六)공(七)고(八)를(九)하(一〇)고(一一)반(一二)고(一三)자(一四) 또는(一五) 안(一六)리(一七)자(一八)로

하(一)여(二)공(三)자(四)진(五)이(六)장(七)제(八)한(九)번(一〇)후(一一) 용(一二)고(一三)의(一四)간(一五)내(一六)에(一七)이(一八)장(一九)치(二〇)함(二一)은

간(一)내(二)부(三)문(四)은(五) 무(六)면(七)분(八)모(九)로(一〇) 간(一一)주(一二)하(一三)며(一四) 별(一五)도(一六)이(一七)장(一八)치(一九)리

제(一)칙(二)에(三)따(四)라(五)르(六)치(七)하(八)고(九)서(一〇) 제(一一)결(一二)을(一三) 양(一四)청(一五)하(一六)나(一七)다

기

1 모지귀위치

서오동, 서오동, 서오동, 서오동, 서오동, 서오동

서오동

2기번명세

지 번

마포구 동오동 산 1번지

지 번

서오동 산 1번지

지 번

서오동 산 1번지

지 번

서오동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산 1번지

二. 분묘기수 九 = 기

三. 고묘기간 단기 四 = 九 = 三년 자 四월 = 三일은 자 一월 = 三일은 六개월간

四. 묘지이장방법

一. 용묘기간내에 변묘자가 莫地火葬場 埋葬 및 火葬

取締規則 제 三 조 의 지 제출 하 必 將 證 明 書 附 屬 是

동시행세 칙 및 동취급규정에 따라 매장 또는

회장안치를 받을 수 있다

二. 분묘출매 대한 접수와 인허가증 발급 등 의 모든

세 요 동 등 장 은 하 비 금 취 급 제 한 다

三. 분묘장비 (기)는 동취급규정 제 七 조 에 따라 매장

할 경우 의 는 용 묘 지 가 급 적 인 주 용 동 묘 지

의 의 장 하 의 아 한 다

191

예산액	750,000.-	사제리추산액
지출잔액	31,500.-	4월.4일
예산잔액	718,500.-	제2회
당회지출예정액	90,000	

1. **공공방범반**
 별지공고안과 같은 3개신은에 1년간공고기로한다
 2. **공고비** 一 金九萬圓(換)
 (비액) 3개신은 X 1월 X 30,000환 = 九〇,〇〇〇환
 3. **지출비목**
 (가) 사제리공우로리구역정리비(항) 사무비(우) 선비및수수료(정) 수수료
 (나) () ()

서울특별시

각구청장(제마포구)
가(노)지사 권

두(0) 권

수(제)진(제) 관(하)내(별)지(용)고(내)용(을) 위(관)하(에)
주(지)사(제) 주(사)기(바)람(스)다

(별)지(리)용(고)문(침)부(가)

(나) (=)

부(사)장

의(부)구(청)장
의(부)구(청)장
전

두(0) 권

수(제)진(제) 관(하)내(부)부(고)사(제) (九)호(로)시(행)

명령된 귀환하 시프트 지구획 정리 지구내에 있는
부담을 다음과 같이 이장기인 트렉터나 사무취급에
유구나바도 유구 하사나

작기 작기보리이장 방법의 유번과 제출사서는

별지양식 (1) 개장 및 화장인하는 별지양식

(2) 따라 처리하기 청안함

(3) 작기는 품의인 작기가 같은 단표은 방법은 제의

(3) 단

의생라라

공보라장 전

등 권

가 제 권에 단 하나 별 지공고 네 봉을 일 반 사 반
에 제 주 지 시 고 제 하 분 나 각 신 용 에 늘 리 보 든
하 제 주 시 기 바 람 나 다

(별 지 공 고 용 침 부)

신술루벌시공고제

(1919년)

신술루벌시공고제 三三호

四三九〇년(一)월(二)일은자 내무부고시 제三九九호로시행

영정된 당시관하 마포구서포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이상은 분포는「莫地大塚地埋藏부」로大塚地 取帝規則제

조내지 제三三호의 의지 과기외의지 이상지로 하았으니

부포의변이라 모든간리라는는지인 기은내의 이상할

지술의의공고한다

향약소정기은내의 의장지남은분포는 부포

부포를 간주하고 당시의 의장한다

단기四三九三년(一)월(二)일

신술루벌시장 임흥우

신술루벌시장

